

#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 번	안 호	299
--------	--------	-----

제출년월일 : 1993. 12. 1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폐지사유

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되었던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004호, '93. 11. 13)이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폐지근거

-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8(후기고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2항

## □ 조례안 : 덧붙임

## □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상황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 (충청북도조례 제1891호, 1991. 3. 2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